

# 保險의 集團性에 關한 研究

夫 鐘 哲

## I

우리는 保險의 本質에서 多數經濟의 集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말하자면 保險이라는 것은 多數 經濟單位의 集團에서 酿金하는 保險料와 保險金이 資金으로서 交流하는 特殊한 機構인 것이다. 이러한 機構는 加入者의 集團인 保險團體의 存在를 그 成立의 基礎로 하는 것이다. 元來 保險團體는 加入者相互의 單純한 結合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또 保險企業과 加入者와의 사이에 個個로 結合된 保險契約의 抽象的인 集合도 아닌 것이다. 元來 그 組織의 成立이란 點에서 본다면 우선 個個의 保險契約에 따라 加入者와 保險企業이 서로 結合이 되기는 한다. 이것만으로 多數의 加入者와 保險企業과의 關連으로서 所謂 保險關係가 생기지만, 이러한 保險關係는 별 셔 그 때 하나의 經濟的인 組織이 形成되는 것이다. 保險의 本質을 이러한 機構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着眠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故로 保險團體는 元來 加入者의 集團이지만 더 나아가서 保險의 機構를 成立시키는 基礎인 構成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構成體는 保險의 機構나 保險關係와 그 實體에 있어서는 안틀린다. 이렇게 保險團體는 保險의 機構 또는 保險關係와 그 實體가 같다는 것은 그것을 構成하는 大量의 加入者의 全體로서의 人格的結合에 着眠한 結果인 것이다.

이러한 全體로서의 人格的結合은 動的으로 一部의 學者가 말하는 것처럼 生命體로서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또는 靜的으로 組織으로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前者は 社會學的 考察의 結果이고 後者は 經濟學的 考察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考察下에서 前者를 保險團體라고 불리우고, 여기에 대해서 後者를 保險關係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保險關係를 機構로서 意識한다면 거기에서 成立할 수 있는 經濟的事實을 내세워 이것들이 하나의 秩序를 만든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加入者가 構成하는 集團은 社會學的 考察下에서는 保險團體로서 그리고 또 經濟學的 考察下에서는 保險機構 또는 保險關係로서 各己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保險의 集團은 社會學的으로 또는 經濟學的으로 때로는 法律的으로 各己 別個의 理論

## 2. 논문집

을構成하는 것이다. 단지 이法律的考察에서는 保險契約이問題가 되어加入者와 保險企業과의人格的結合이全體로서가 아니고個個의對立關係에 있어서問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社會學的考察을取扱하고 또 保險의本質論인經濟學的考察과의關連을明白히하려는 것이다.

近來 保險을社會學的으로把握하고 社會學이一般的으로쓰이는方法에 따라 保險의構造를分析하고 더나아가서 保險學 그自体를社會學의一部門으로서建設하려는野心的인 움직임이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理論이經濟學으로서의 保險學에 대해優位에 있고 또는여기에代身하는地位를점하려고까지하는 것이다. 이러한것들은經濟學의部門에協同體理論을取扱한에서有力하게된것이라고본다.

元來 保險에關한學問은 그發展의最初에는主는法律的解釋이었으나 때로는技術的解明에끝났다.

그러나 이러한考察이實은經濟現象인保險을前提로할때만이可能한 것이다. 그래서經濟學으로서의保險學이成立한 것이다. 獨立科學인保險은이때비로소本來의姿勢를나타내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여기에서注意할것은이렇게經濟學으로의保險學의建設에努力하고있는反面에社會學의考察이활발하게登場하고있는 것이다.

集團으로서의保險團體는 그self가하나의社會를意味한다. 그래서 그法律的·技術的또는經濟學的考察을可能케하는諸現象은모두이社會에생긴다. 元來 保險에關한 모든學問은이러한社會에關한考察에대해서그觀點을달리하는것으로우리는이러한考察의基礎를問題로하는 것이다.

經濟學으로의保險學이保險에關한모든考察에대해서基礎的優越을自覺하는것과같이社會學으로서의이러한保險學이經濟學으로의保險學에대해서도그優越을明白히하려고한것으로理解할수있다. 保險을앞에서와같이社會學的으로理解하려는見解는그考察의內容에있어서는保險團體를하나의構成체로써그集團形成을問題로하는것이다. 이때特殊의觀點으로取扱되는것은保險의社會性이그團體性和密接하게關連된다는 것이다. 이러한關連이라는것은多分히倫理性을갖고이러한意味에서社會學이때때로問題로하는所謂協同社會의性格과이것과一見그出發點을달리하는生活經濟學의理論이問題로하는構成체의性格이各己保險에주어지는것이다.

### II

保險의社會學的考察이라면 단지一定의社會組織에대한保險의役割이나保險이社會에대해서갖는機能上の關連, 即, 保險의社會性을問題로하는것은아니다. 여기에서말하는

社會學的 考察에서 問題되는 것은 社會學에서 取扱되는 集團의 構成이나 集團 그들의 性格이 保險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考察은 保險이 保險으로서 獨自의 社會를 形成한다는前提에서 그 特殊한 社會의 分析의 基礎를 이미 社會學에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諸原則에서 求하려고 한다고 생각될 것이다.

롤백크(Rohrbeck, W.)는 1910年「保險制度와 社會學」이라는 論文에서 保險이라는 制度는 社會學의으로 充明되어야 한다는 것을 問題로 하였다.

그의 見解는 所謂 形式社會學의 立場을 따라 特히 「짐멜」(Simmel, G.)이나 「퇴니에스」(Tönnies, F.)에 의한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一般的으로 「짐멜」은 社會의 文化內容과 對立해서 그 形式概念을 設定함에 따라 社會學에 獨自의 對象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sup>

이러한 것으로 「롤백크」는 保險의 協同體理論을 創造하게 된것으로 본다.<sup>2)</sup> 「퇴니에스」에 依하면 社會의 構造는 觀念의 結合에 對比되지만 이러한 點에서 그는 人間意志의 分析에 社會學理論의 基礎를 求하였다. 그래서 그 意志의 分析에 있어서 그는 本質의 意志와 任意意志를 明白히 하고 前者를 生의 統一原理(Prinzip der Einheit des Lebens) 後者를 思惟의 構成體(Gebilde des Denkens)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本質意志가 任意意志에 先行하고 그 前提條件이 되는 것은 當然하므로, 前者에서 結合된 協同社會가 後者에 依해 結合된 利益社會에 대해서 構造的으로 上位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本質意志와 任意意志가 앞의 協同社會와 利益社會의 要素가 同一하다는 것이 明白해지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퇴니에스」가 指適한 것은 歷史的 意味를 갖는 組織이 아니고 오히려 要素의 인 意味를 갖는 組織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그의 理論은 超歷史的 性格을 갖는 것이다. 그가 協同社會의 存在를 그로부터의 歷史的 發展의 結果로서 利益社會속에서 찾어내 그 利益社會를 分析·批判하는 속에 協同社會의 再興의 可能性을 指示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社會學이 多分히 倫理性을 包含하였음을 알 수 있다.

「롤백크」는 「保險制度와 社會學」에서 保險은 元來 一定의 技術的 構造를 갖는 것이지만, 그 本質에 있어서는 集團의 形成을 意味하고 또 그러한 點에서 社會構成體인 것이다. 이러한 構成體의 形成에 대해서 心理學的 原則의 適用이라는 것이 그의 理論을 만든다고 생각된다. 即, 그는 그 構成體의 形成의 極히 單純한 觀念에 依해 行해진다는 「짐멜」의 思想을 그 原則으로 하여 被保險者의 集團에 끌어 드린다. 또, 觀念의 結合은 人間의 結合에 類似하다는 「퇴니에스」의 思想과 비슷한 것이다.<sup>3)</sup>

「롤백크」는 被保險者와 保險加入者가 法律的으로 區別되지 않고 단지 加入者로만이 取扱되

1) Simmel, G., Soziologie, 1923.

2) Rohrbeck, W., Versicherungswesen und Soziologie, Assekuranz, Jahrbuch, Jahrg.

3) Tönnies, F.,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926.

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 대해서 그는 모든 理解下에 個個로 保險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直接性을 안 갖는 概念 自体이다. 그것은 本來하나의 流動體라고 생각된다. 經濟 또는 技術上의 能力의 關係나 經濟的・文化的 要求가 不斷히 變化되는 實現인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加入者는 個別의이고 具體的인 存在는 아니고, 막 到達할 수 있는 客觀化에 不可한 것이다. 이러한 客觀化라는 것은 當然히 加入者의 道德的 性格을 意味한다. 「톨백크」에 依하면 이러한 加入者の 集團連繫性에서 일어나는 同時에 그의 保險能力의 本質的 前提條件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는 個個人이 集團에 制約된다는 性格이 保險學에 만이 아니라 一般的으로도 이 것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加入者는 保險團體에의 適合이라는 것, 換言하면 그 個性의 社會化가 要求되지만 그러한 意味에서 間接으로는 加入者自身이 保險企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톨백크」가 保險企業과 加入者와의 關係를 契約上의 對立者로 보지 않고 同志라고 하는 點을 알 수 있다.

保險을 하나의 構成體라고 하는 「톨백크」는 그 構成의 分析에 대해서 單純히 加入者에서 出發하지 않고 오히려 道德上의 制約을 받는 保險技術에 着眠하고 있다. 即, 그에 依하면 加入者の 本質을, 個個의 被保險者에 대하여 論할 것이 아니라 保險技術 即, 集團 또는 保險團體 그 自体에서 認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加入者는 그 經濟的 能力과 保險施設의 技術的 可能과의 關係에 不過하지만, 그것은 또 他方에서 健全한 法的 秩序나 合理的인 國民經濟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上述한것 처럼 「톨백크」가 保險에 있어서의 集團構成의 考察에 있어서 加入者에 着眠하면서도 이러한 加入者를 個個의 契約者로서가 아니라, 多分히 倫理性을 갖는 全體와 關連시켜 봤다는 것은 極히 注意할만 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것을 現實・具體的인 存在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理想型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나 그는 心理的인 考察을 그 속에 包含함은 否定할 수 없다. 「퇴니에스」의 保險의 概念은 危險(Gefahr)에 대한 豫防手段(Vorkehrung)이고 未來에 대한 配慮(Fürsorge)이고 生活의 安定化(Sicherung)에서 始作된다. 即, 人間의 勞動即, 活動은 이러한 生活의 安定化를 為한 것이지만 이러한 努力은 獨自的으로나 또는 他人과의 協力에 依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即, 서로의 사이에 그것이 그들의 欲望이나 能力이나 行爲 속에 나타나는 것이 保險의 社會的 考察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또 그에 따르면 人間은 여러가지 關係나 結合下에 있지만 그것이 다 生活의 安定化에 關連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人間關係의 가장 重要한 것은 相互扶助를 發生시키지만 그것은 本能的인 動物的 衝動에 基因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相互扶助는 近代文化의 歷史에서 본다면 上述한 것처럼 協同社會에서 利益社會에로 發展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協同社會에 結付되었다는 것은 그에 依하면 直接的으로 共同의 또는 個人的 損害의

救濟에 必要하고 또 相互의 助成과 救助 (Gegenseitige Förderung und Rettung) 援護와 管理 (Hilfe und Pflege) 慰安과 激勵 (Tröstung und Aufrichtung) 防禦와 安定化 (Schutz und Sicherung) 等에 必要한 것이다. 이렇게 强者는 弱者에 助力하고 또 弱者일지라도 不幸을 當한 强者를 自己相應에 救助한다.

家族에 있어서나 血緣團體에 있어서도 지나친 不幸을 免하기 為하여 救助가 行해져 無援의 狀態에 놓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協同社會에 있어서의 安定化는 「퇴니에스」에 依하면 人的關係에 基因한다. 그러나 그것이 物的關係에 基因할 경우에는 그 社會構造는 多少 틀릴 것이다. 元來 富는 사람에게 獨立性을 주는 것이지만 이경우 그 富의 安定性이라는 것은 本質的으로는 誠實의 信賴나 또는 國民의 固有의 利益에 基因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因果의 秩序整然한 關係를 아는 結果라는 것이다. 여기에 協同社會와 利益社會와의 中間領域의 觀念이라고 생각되며 個人主義를 基礎로 하는 交換社會 또는 商業社會의 發展에 따라 徐徐히 協同社會의 諸制約이 利益社會의 諸制約에로 移行하게 되는 것이다. 또 그에 依하면 이러한 事情은 商人의 冒險的去來에 가장 심한 것이다. 即 善險이 크면 그만큼 商人의 利得도 커지고 또 反面에 損失의 危險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危險은 神命이나 運命의 不幸 等이라는 것은 아니고 人の 考慮가 可能하고 또 그 考慮를 必要로 하는 多少나마 起起시킬 수 있는 事件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商人은 이 危險의 程度를 正確히 認識하고 消極的인 價值로서의 그것을 그의 計算에 받아 드린다. 이러한 要求에 應해서 그에 있어서는 適當한 補償과의 相換에 이 危險을 引受하려는 請約이 成立되는 것이지만 이때 保險者는 商人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商人이 他의 商人과 다른 것은 그가 一定의 蓋然性을 갖는 損害의 填補라는 觀念的인 商品을 取扱하는데 不過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퇴니에스」에 있어서는 安定性과 保險과의 分化作用은 保險制度의 重要한 特徵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保險制度의 發展은 上述한 것처럼 「퇴니에스」에 依하면 그 여러가지 構成에 있어서 모든 社會의 發展이나 그 主動力의 生生한 映像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生存을 為한 相互救濟나 結合 또 共同의 困窮이나 危險의 克服은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核心이고 또 實體인 것이다. 이것을 為한 制度는 一般的으로 사람들의 協同社會의 關連의 內部에 그 意識의 根源을 갖고 또 거기를 向하여 努力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이 協同社會의 關連은 「퇴니에스」에 있어서는 一體的인 非合理的結合이지만 實은 그 중에서 個人主義的·合理主義的 利益社會로서의 構成體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所謂 社會學的立場에 있어서의 「퇴니에스」의 保險理論은 上述한 바 있거니와 이 考察의 對象이 되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이 集團으로서의 保險團體이지만 그 構成이란 點에 있어서 그는 協同社會와 利益社會와의 概念을 여기에 適用하려고 하였다. 그는 이 考察에 있어서 保險團體를 協同社會로 보는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 6. 논문집

을 上位의 社會構造로 생각한 點을 안다면 그 意圖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을 協同社會的 色彩가 있는 集團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協同社會化 하려고 하는 努力이 尊重되고 있는 것이다.

「퇴니에스」의 이러한 見解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事項에 注意해야 할 것이다. 即 그는 保險團體의 構成의 基礎를 生活의 安定化에 求하고 있지만 이 安定化는 말하자면 災害인 危險의 除去를 意味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多數人에 依한 損害의 填補라는 것을 保險의 本質로 하는 것이다. 故로 이러한 危險에 直面한다는 點에서 社會的 結合의 手段을 取하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經濟的인 強弱의 程度에 相違가 있더라도 같은 様態의 威脅을 주는 災害에 대해서 非常 武裝하게 되는 것이다.

私見으로서는 保險은 元來 損害의 概念에서만이 解釋되는 것은 아니다. 保險이 「퇴니에스」가 말하는 것처럼 生活의 安定化를 目的으로 한다지만 그 安定化는 損害에 대한 危險의 除去에만 求할 수는 없는 것이다. 危險이라는 것은 損害의 概念을 빌리지 않고도 이것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保險에 있어서 損害나 危險의 概念이 不可缺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生活의 安定化라는 加入者의 目的에 結付되는 限 保險의 効用을 問題로 하는데 不過하다. 이러한 効用은 保險團體의 特殊한 構成下에서만 實現되어 이러한 保險團體의 構成은 他面에 있어서 保險의 技術이라 불리우는 保險企業의 操作에 따라 可能한 것이다. 保險의 効用과 保險의 技術이라는 兩面이 一體가 되어 保險團體를 形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特殊의 經濟的 組織이라는 點에서 特히 保險機構라고 하는 것이다. 故로 지금 保險團體의 構成을 問題삼는데 대해서 이 保險團體를 具體的 存在로 보는가 抽象的 存在로 보느냐에 關係없이 여기에 結付되어 있는 加入者의 生活目的에 注意하는 것은 實은 그 保險團體의 倫理性을 明白히 하는 데 不過한 것이다. 萬若 이러한 方法이 「퇴니에스」의 強調처럼 保險의 社會學的 考察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保險의 効用이라는 問題, 特히 政治的 見地에서의 考察에 不過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社會學의 課題가 一面에 있어서 集團으로서의 構成體의 構造를 明白히 하는 點에 있다면, 이러한 社會學의 考察은 特殊한 構成體인 保險團體에 대해서도 不可能한 것도 아니고 意義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保險이 協同社會와 利益社會중 어느 性格을 갖느냐는 종종 問題가 되는 것이다.

保險團體는 上述한 것처럼 構成體의 實體를 人格的 結合으로서 본것이지만 이 人格은 말할 必要도 없이 經濟主体로서의 그것이다. 故로 保險은 多數의 經濟主体가 加入者로서 結合함으로서만이 可能한 것이다. 뷔르너(Wörner, G.)가 保險의 形成이라는 것을 하나의 過程으로 볼

唯에 經濟單位의 結合에 不適하다는 것은 그 事實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保險團體의 形成을 하나의 過程으로 볼 것인가, 또는 그 過程의 結果로서의 狀態로 볼 것인가는 問題할 必要가 없다. 어쨌든 經濟生活의 確保라는 點에서는 共同目的을 갖는 人們들에 依하여 保險團體가 形成된다는 것은 많은 學者가 認定하는 것이다.<sup>4)</sup> 「바그너」(Wagner, A.)는 이 點을 重視하여 이 共同欲望은 協同體生活 속에서 나타나고 오히려 이 協同體生活을 通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sup>5)</sup> 共同欲望이 위와 같이 協同體生活에 依해 만들어진다고 볼 때에 保險關係를 매우 特殊한 性格을 갖는다고 안할 수가 없다. 元來 이러한 見解에 따르면 이 共同欲望은 많은 個人欲望을 基礎로 해서 그것이 어떤 點에서 利害를 종종 같이하는 경우의 그런 欲望이 아니고 오히려 逆으로 人們들의 集團生活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하여 그것과 같이 發展하는 欲望을 말하는 것이다. 即 그것은 個人이 그 一還으로 所屬하는 協同社會의 目的에 따라 人们的 集團生活의 諸關係에서 생긴다는 意味에 있어서 協同社會와 運命을 같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人間協同社會에의 依存을 意味하고 人们的 社會的 性格의 하나의 歸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人間欲望이 위와 같이 協同社會의 이든 아니든간에 이 欲望에 依해 保險團體가 形成된다는 點에서 본다면 保險의 集團的 性格의 分析은 前章에서 말한 것처럼 社會心理學의 考察下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 欲望이 實은 所謂 協同體生活에 따라 생기고 또 그 歸結이라는 點에서 본다면 現實에 存在하는 것은 協同社會 바로 그것이고, 個人이 個人으로서 獨立에 그 存在를 主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個人은 保險에 있어서는 말할 必要도 없이 加入者이지만, 保險團體의 集團性에서는 그 個別의 存在의 意義를 壓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質的으로 存在하고 또 本來의 考察의 對象이 되는 것은 保險團體 그것인 것이다. 그러나 이 集團을 具體的 存在로 보느냐 또는 抽象的 存在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問題가 되는 것이다.

어느것이나 그것이 保險團體로서 特殊의 集團性을 갖는 것은 他面에 있어서 保險技術의 特殊性에 基因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保險團體의 存在가 具體性을 가졌든 또는 抽象性을 가졌든간에 그것이 集團으로의 統一的 意志를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意義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린덴保姆」(Lindenbaum, J.)은 이것을 抽象的 存在로 理解하고 또 그 團體意志의 缺如를 主張하였다.<sup>6)</sup>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는 保險團體의 協同社會的 性格은 元來부터 그의 團體性 自體에 대해서도 이것을 否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그너」는 여기에 反해서 保險團體는 단지 危險團體로서 存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保險의 技術的 特徵을 특히 問題로 한 結果로 보이며 그 意圖는 元來 保險이라 할 수 없는 自家保險을 保險에 包含시킨

4) Wörner, G., Allgemeine Versicherungslehre, 1920.

5) Wagner, A., Der Staat und das Versicherungswesen, 1881.

6) Lindenbaum, J., Einvierteljahrhundert der Bedarfstheorie der Versicherung, Z.F. Nationalökonomie, 1930.

데 있다. 그러나 他方에 있어서는 그는 이 危險團體는 個人이 協同社會에 參加·依存하고 共同欲望의 充足에 努力하기 為한 것이기 때문에 危險團體 그 自體가 抽象的 存在라 할지라도 그 成立의 基礎로서 그는 적어도 協同社會의 具體的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그너」가 共同欲望의 充足을 強調하고 또 그것이 協同社會의 成立의 本來의 意義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點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에 있어서의 保險團體의 構成이 多分히 倫理性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點에서 保險의 協同社會的 性格을 說明하면서 그것이 단지 狀態로서의 保險의 理解에 그친 「베투너」와는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保險에 있어서의 倫理性의 強調는 以上과 같이 共同欲望의 充足을 明白히 하는 데 있지만 그 경우에 保險의 經營은 資本主義的 精神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톨백크」가 保險의 經營을 加入者의 共同意欲과 協同體理念의 表現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에 있어서는 保險은 共同하는 것을 意味하고 保險의 社會的 任務는 協同의 促進이라는 點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協同이 保險의 本質이고 契約이라는 것은 外面的인 形式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保險契約을 相互利益主義에 依한 双務契約으로 보는 것은 自由主義經濟의 不幸이라고까지 하였다. 保險은 결코 偵利가 아니라는 것이다. 保險企業이나 加入者도 단지 事業經營을 為한 것이 아니고 危險協同의 構成員 全體를 為하여 活動한다는 것이다. 故로 그는 保險은 保險의 經營의 固有의 理由에서 社會構成體로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實은 國民協同體의 여러 目標와 考慮라는 點에서 社會施設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保險은 그 自體를 為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危險協同體의 構成員 全體의 利益을 바라보는 것이고, 保險契約은 이러한 全體의 協同體意志의 發露에 不過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危險團體의 管理者は 保險協同體의 代表者이고 또 危險協同體에 屬하는 加入者の 利害뿐만 아니라 國民財產의 信託의 管理者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危險團體는 國民協同體속에서 이 國民協同體를 為하여 諸力を 모아, 價値를 蕊積하는데 그 使命을 다하는 經濟的인 扶助手段이고, 그런 뜻에서 保險은 결코 自己目的은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톨백크」에 依하면 保險은 協同扶助를 氏族制度에서 貨幣經濟로 옮긴 것에 不過하다. 故로 保險의 技術的 基礎에 따라 行할 수 있는 偶然的인 貨幣欲求의 相互充足이라는 것은 國民協同體를 為해 이루어 진다는限에서 承認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톨백크」가 말하는 協同社會的 性格은 實은 技術的 關連인 危險團體에서 求하고 그것이 그대로 保險團體의 性格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는 保險團體의 本質을 危險團體에서 求하고 여기에서 所謂 協同體理論을 展開 하였지만, 이러한 點에서 그의 所說은 「바그너」의 그것과 根本的으로는 差異가 없다. 그에 따르면 保險團體가 協同社會的 存在라는 것은 그 自身 協同社會인 國民經濟를 為하여 危險團體가 扶助手段인 任務를 갖는 結果이고 여기에 그 倫理性이 強調되었다. 그러나 私見으로서는 단지 이러한 것만으로는 保險團體 그것이 協同社會的 性格을

明白히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본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國民經濟가 協同社會라 할지라도 이 協同社會에 成立한 保險團體가 그自身이 갖는 特殊의 構成 때문에 오히려 利益社會가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保險團體가 國民經濟의 性格을 反映한다는 것은 元來 疑心할 餘知가 없지만 그렇다고 兩者의 性格이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保險에 協同社會的 性格을 認定하는 原因을 危險의 分担에서 說明하고 더 나아가 危險團體에 이것을 求하는 見解는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例를 프롬(Fromm, F.)이나 리베젤(Riebesell, P.)을 들 수 있다.<sup>7)</sup>

그들에 依하면 保險은 하나의 協同社會이지만 그것은 이것을 構成하는 사람들에 대해 危險을 그 全員에게 分散하여 危險의 影響에 關한 不確實性을 除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問題되는 것은 이 協同社會全体로의 効用이나 利害이지 個人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危險團體는 特定의 危險에 當面한 者들만으로 形成되어 이러한 사람들은 그 盛衰에 關해서 相互一致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見解에 있어서는 危險團體의 構成은 國民協同團體와 本質的으로 틀리지 않는다. 國民協同團體에 있어서는 國民 各者는 이 協同社會의 福利에 奉仕하고 또 協同社會로서는 各員의 利益行為에 制限을 加한다.

危險團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各 加入者는 意識的이든 無意識의이든 간에 全體即 모든 加入者의 結合인 協同社會의 하나에 不過한 것이다. 保險이 営利企業에서 行해지는 경우에는 加入者로서는 그가 危險團體의 一員이라는 自覺은 存在안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協同社會의 本質에서는 重要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리베젤」은 保險에 있어서의 協同社會는 危險에 따라 行해지는 酿出의 手段으로의 結合이고 이러한 點에서 共同扶助를 意味한다고 하였다. 即, 그는 保險이라는 것은 最少의 出資로 偶然 또는 評價可能한 欲求를 平均하기 爲한 協同社會라고 말하고 있다.

「프롬」이나 「리베젤」에 있어서 保險團體가 協同社會라는 性格 속에는 多少나마 倫理性이 包含되어 있다. 所謂 公益優先의 一般原則이나 「一人은 萬人을 爲하여, 萬人은 一人을 爲하여」라는 保險固有의 原則은 保險成立의 倫理的 基礎라고 하지만 그것은 加入者도 保險企業도 같이 保險團體의 犠牲에 있어서 不當의 利益을 얻지 않는 경우에만 該當되는 것이고, 危險의 同一性을 갖고 또 그 評價가 可能한 경우에 이러한 原則은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公益優先의 原則은 保險團體에서만이 아니라 國民經濟에 대해서도 強調되고 있다. 이러한 國民經濟와 이것을 基礎로 해서 成立된 保險團體와의 各己 協同社會로서의 相互關連에 대해서는 이들의 見解는 明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保險의 協同社會라는 性格에 대해서도 또 이를 이르는 社會過程에 대해서도 社會學的으로 充分한 說明이 없다는 것이다.

7) Wirth, K. U. Fromm, F., Das Versicherungsgeschäft, 1935.

## IV

保險協同體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 봤다. 또 集團으로의 保險團體의 性格을 問題로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考察이 經濟學인 本來의 問題에서 며나, 너무나 社會學의 範圍에 파고 들었다는 데 대해 注意해야 할 것이다.

保險學의 課題를 經濟學의 領域에서 끝을 맺지 않고 社會學의 考察에까지 넓히는 것을 強調하고 새로운 保險學의 建設을企圖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態度가 是認되어야 할 것인지 問題인 것이다.

集團이라는 것은 그 構成을 問題로 하는限 그것을 形成하는 個人的 人格的 結合으로 考察할 수 있다. 이런 것은 生活의 基礎가 集團에 있든 또는 個人에 있든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 結合의 形式이 어찌한 性格을 갖느냐가 問題되는 것이다. 「퇴니에스」의 見解는一般的인 集團에 關한 것만이 아니고 特殊의 集團인 保險團體에 대해서도 極히 注目 할만한 見解를 表하고 있다. 元來 그의 理論의 特徵은 集團構成의 形式을 協同社會와 利益社會로 나눈 點에 求할 수 있지만 이것을 保險團體에서 본다면 前者の 性格이 認定되는 것이다. 이런 見解에 呼應한 「톨백크」는 倫理的 意味를 強調하면서 保險의 協同社會의 性格을 明白히 하려고 하고 있다. 保險團體의 構成에 대해서 協同社會의 性格을 主張하는 者와 利益社會의 性格을 主張하는 者가 서로 所謂 危險團體의 技術的 關連에 注意한 것은 대단히 興味있는 일이다. 元來 技術的 關連인 危險團體의 構成은 保險本質의 一面을 나타내지만 上述한 바와 같이 그것이 本質을 形成하는 것은 그것과 不可分의 保險의 効用과의 結付이다. 故로 이러한 技術的 關連이 한쪽 見解에서는 倫理性의 強調때문에 協同社會로서 考察되고 또 한쪽의 見解는 相互利益主義의 作用을 肯定하는 結果로서 이것을 利益社會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礎的인 事實에 대해서 全혀相反되는 性格이 主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理想의 追求와 事實의 分析과의 立場의 相違에 따른 것이다.

所謂 協同體理論에서는 上述한 것처럼 存在로서의 保險團體보다는 當爲로서의 保險團體가 問題이지만 여기에 反對하는 學者는 오히려 그 存在로서의 意義를 主張한 것이다. 그러나 嚴密히 말하면 協同體理論에 있어서의 「톨백크」의 主張은 이러한 點이 混同 되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保險團體 그것의 構成과 保險團體가 설 수 있는 國民經濟와의 關連이 明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많은 學者들이 國民經濟의 協同社會의 性格을 說明하였다. 그것은 國民協同體인 것이다. 그러나 이 國民經濟는 今日의 現實의 構成에 있어서는 完全한 協同社會라고는 할 수 없다. 協同社會의 本質이 단지 그 構成員이 一致하여 相互的으로 그 生活을 扶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程度의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여러 構成體에서 볼 수 있다. 保險團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保險이 國民經濟에 參與하고 그 構成의 一部로서 貢獻한다는 機能을 無

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國民經濟가 어떤 國家에서 協同社會로서 強力히 規制가 되든 안되든 간에 그 國家가 一体가 되어 發展하는 目的을 合致하도록 保險이 保險으로서 갖는 使命을 다하는 것은 否定할 수가 없는 것이다. 構成體로서의 保險團體가 協同社會이나 利益社會이나의 問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태여 가릴 必要는 없다. 이러한 것이 可能하다 해도 保險團體에 만이 適用된다고는 할 수 없다.

保險團體에 關한 社會學的 考察은 無意味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에 앞서 經濟學的인 考察을 해야 할 것이다. 保險이라는 것은 經濟生活의 確保라는 點에 關해서 機構로서 形成된다. 이러한 機構가 때때로 다른 見地에서 社會學的 構成體로서 考察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社會學的 考察의 對象인 保險의 構成體는 經濟學的 考察의 對象인 保險機構의 存在에서만이 成立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集團인 保險團體가 「틀백크」가 말한 것처럼 加入者와는 別個의 主体로서 存在하느냐 아니나는 여기서 問題가 안된다. 여기에서의 問題는 이 保險團體가 多數의 加入者에 依해 形成되어 또 이러한 加入者가 國民經濟上의 生活의 主体라는 것이다. 그들은各自의 計劃에 따라 經濟生活을 하고 그 計劃의 하나로써 保險關係에 結付되어 여기에서 保險團體가 이루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計劃은各自의 創意에 따라決定되지만 때로는 國家의 意志에 따라決定되고 또는 制限되는 경우도 있다. 加入者에 있어서의 이러한 計劃은 保險團體의 構成側에서 修正을 받는다는 데에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保險의 技術의 作用이 있는 것이다. 即 保險料는 大數의 法則下에 保險金과의 對應의 關連에 따라 算定되어 加入者は自己가 計劃하는 必要한 保險金의 크기는自己가 支出하는 保險料의 크기로決定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加入者の 創意가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이 計劃의 相對는 말할 必要도 없이 保險企業이다. 이런 企業도 經濟主體인 立場에 있어서 獨自의 計劃을 갖는다. 이것이 保險의 技術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保險의 技術에 나타나는 保險企業의 計劃과 加入者の 計劃이 相互 對應하여 保險의 機構를 形成하는 것이다. 여기에 人格的 結合으로의 保險團體가 形成되는 것이다. 故로 保險의 機構는 經濟主體로서의 保險企業과 多數의 加入者間に 形成되어, 이러한 點에서는 人格的 結合으로의 保險團體 그것에는 主體로 認定되는 것은 成立할 수 없다. 이것은 保險企業에서만이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元來 保險企業은 加入者를 떠나서는 成立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意味에서 保險團體로서의 主體는 이것을 加入者에게 求한다는 것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加入者は 또 保險企業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經濟主體로서의 保險企業과 加入者와는 對立의 으로 또 不可分으로 保險團體를 構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그 構成은 國民經濟의 그것과는 좀 다를 것이다. 國民經濟에 있어서는 國家도 또 經濟主體로서의 地位를 確保하고 經濟主體로서의 多數의 企業이나 個人을 그 周圍에 不可分으로 結付시키지만 그 結合은 결

코 對立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國家가 經濟主体라 할지라도 그것은 實際에 있어 國家의 行政主体로서의 表現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國民經濟에 協同社會的 性格을 認定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意味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國民經濟를 여러 學者가 主張하는 것처럼 純粹한 協同社會로 생각하는 것을 容認한다 해도 이러한 協同社會로서의 國民經濟에 그 基礎를 갖고, 그의 部分으로 奉仕하는 保險團體는 그런 때문에 協同社會의 性格을 갖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協同社會와 利益社會와의 區別을 이러한 保險團體에서 求할려면 그 것은 明白히 利益社會의 性格이라 理解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構成員인 加入者는 今日의 經濟組織下에서는 모두各自의 責任에 있어서 그 經濟生活을, 確保하고 하고 그 意味에 있어서는各自의 正當한 利益의 達成을 爲하여, 그 反面 他의 利益도 尊重한다는 態度下에 多數人間에 結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保險의 機構라고 하는 特殊의 經濟的 關連에 依한 것이다. 이러한 保險의 機構는 이미 말한 것처럼 保險料와 保險金과의 特殊한 資金交流의 組織이라 할 수 있다. 이 交流에 있어서 保險企業과 加入者の各自의 計劃이 相互 結合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集團으로의 保險團體의 本質은 經濟學的 考察로서의 保險機構의 分析에 依하여 明確히 되어 單只 加入者の 結合關係를 問題로 하는 社會學的 考察이나 社會心理學的 考察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元來 加入者쪽에서 말할 수 있는 保險의 効用을 保險企業 쪽에서 말할 수 있는 保險의 技術에 따라 可能하고 또는 逆으로 保險의 技術은 保險의 効用에 依해 成立한다. 이러한 二面的 考察이 不可分의 關係에서 行해지는 保險의 本質이야 말로 여기에서 機構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保險의 集團性이라는 것은 그것이 社會學的 見地에서 取扱되는限一面的 考察이 된다는 것에 注意해야 할 것이다.

—Summary—

## A Study on the Collectivity of Insurance

*Boo Jong-chul*

This thesis dealt with the contents of the theme of group in the nature of insurance. Till now, the theory of insurance has studied from the economic or legal points of view but some German scholars have studied it as a sociology and also insisted on a high position than others.

We can think Rohrbeck, W. as a leading scholar who insisted upon the thoery of a cooperative frame and at the same time made distinction between a cooperative society and profit society.

We shall have to stare at his opinion which emphasize the principles of insurance and cooperative society. Also Tönnies, F. and Simmel, G. who have the same opinion with Rohrbeck, W. claimed that an insurance system should be studied as a sociology.

But if one knew an insurance constituent unit which is subjected to sociological study is realized by the existence of insurance structure subjected to an economic study there would be room for reconsideration.

The writer commented and studied the above mentioned scholar's theories.